

13. 土地基本法(案)

立法豫告 1990. 5. 21

1. 입법목적

토지는 생산과 생활의 공통기반으로서 국민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사회정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용·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토지의 소유·이용·개발·거래등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여 토지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대하여 제도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토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립하여 토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수 있게 하고,

토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토지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이 법은 토지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 되며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어야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에 관한 법령

의 정비, 재정및 금융·세제등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토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토지가 재산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토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규정함.

라. 국가등은 토지가 일부 국민에게 과도하게 소유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을 촉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마. 국가등은 인구의 동향,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토지의 제조건을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바. 국가등은 장단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수급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여야 함.

사. 국가등은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확대하며 필요한 용지를 미리 매수·비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아. 국가등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정한 가격과 합리적인 이용목적에 따라 거래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를 규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자. 토지의 소유·이용·개발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에 적정하게 환원되도록 함.

차. 국가등은 토지의 수급계획에 기여하며 국민의 생활과 토지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

카. 국가등은 토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고 국민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 등기, 토지의 소유·이용 상황및 지가동향등 토지에 관한 정보체계를 확립하고 적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6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토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상식코너

基準地價

(standerd land price)

基準地價란 地價의 부당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政府가 算定하여 公示하는 土地價이다. 政府는 어느 지역의 土地에 대한 價格을 정기적으로 鑑定하여 價格을 일반에게 公示하는데, 그 목적은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있다. 이 公示地價는 公共事業을 수행하기 위해 公共體가 된다. 告示對象地域은 지가의 현저한 變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大統領令으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換地

(land reallocation)

換地란 區劃정리사업에 있어 택지의 위치, 地目, 面積等位,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所有主에게 再配分하는 택지를 의미한다(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61號). 換地の 결정절차는 ①換지계획 ②換지설계 ③換지 처분으로써, 換지계획을 세우는데는 가로, 공원등 公共施設의 확장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事業地區 全體面積에서 所有面積 比例로 공제한다. 즉 公共用地를 감보하여 換지를 정하는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